

인턴십 운영규정

제 정 1998. 8.
 개 정 1999. 3.
 개 정 1999. 9.
 개 정 2004. 6.
 개 정 2010. 6.
 개 정 2011. 8.
 개 정 2012. 6.
 개 정 2015. 10.
 개 정 2016. 2.
 개 정 2017. 8.
 개 정 2019. 10.
 개 정 2020. 2.
 개 정 202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 국내외의 산업체에서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인턴십 운영(이하 “인턴십 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격) 3학년이상 재학 또는 3학년 진급예정자로서 학부(과)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개정 2017.08.28., 개정 2020.02.06.)

제3조 (인턴십 시간) ①(중복 삭제 2017.08.28)

②인턴십 과정은 1·2학기는 최소 12주 이상, 여름·겨울학기는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한다.(개정 2017.08.28)

③인턴십 근무기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하며, 야간(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7.08.28)

④인턴십 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7.08.28)

제3조의2 (인턴십 과정의 개시 시기) ①인턴십 과정의 개시 시기는 신청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2016.02.01.)

1. 인턴십 기간이 1·2학기의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4주일 이내 개시한다.
2. 인턴십 기간이 여름·겨울학기의 경우에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 개시한다.
3. 인턴십 기간이 방학기간중일 경우에는 종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개시한다.

②위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에 따른 기간 내 인턴십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턴십 과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강신청 및 등록) ①인턴십과정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인턴십 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학점은 학칙 제33조에서 정한 학기별 최대 신청 범위 내로 한다. 다만, 다만, 방학 중에 실시하는 인턴십 과정은 최대 2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7.08.28.)(개정 2019.10.24)

③이수학기를 연속하여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학기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방학 중에 이수하는 인턴십 과정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만큼 추가로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학 중 신청한 등록금은 당해 학년 1학기(여름방학 이수자) 또는 2학기(겨울방학 이수자) 등록금을 18학점으로 나누어 학점당 등록금으로 산정 하며, 장학금지급 관련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인턴십 산업체 선정) 인턴십 당초 목적과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로서 학부(과)장은 그 적합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턴십 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과)별 인턴십 파견계획 사전수립) ①인턴십 과정을 파견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파견개시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파견 준비계획을 사전수립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02.01.)

②학부(과)별 인턴십 과정 파견 준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견 대상자의 자격여부 및 인턴십 기간에 관한 사항
2. 파견업체와의 협약 및 인턴십 수락여부에 관한 사항
3.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인턴십 종료 후 학점인정 및 교과목 명칭 표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턴십 파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인턴십 지원신청서 제출) ①인턴십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턴십지원신청서를 소속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학과(부)는 제5조 ②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인턴십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턴십 파견 및 사전지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인턴십 대상학생이 원만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사항 안내 및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순회지도) ①국내의 산업체에서 인턴십을 이수하는 학생의 실태파악 및 산업현장의 적응능력 개선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가 현장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 인턴십 이수학생의 경우는 지도교수가 인터넷 및 통화매체 등으로 정기적인 지도와 수시상담을 함으로써 순회지도를 대신할 수 있다.

③순회지도를 한 지도교수는 인턴십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8.28)

제9조의2 (인턴십 지도수당) 인턴십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도학생 규모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인턴십 학생의 의무)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턴십 과정을 마친 학생은 학부(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턴십 최종보고서와 실습기관의 평가서 등을 소정기간 내에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턴십 이수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인턴십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인턴십 과정 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이수인정) ① 삭제(2010.6.1)

②인턴십 학점은 인턴십 이수학기에 해당 학생이 적용받는 학년, 학기에 편성된 교양 및 전공필수 학점으로 이수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③인턴십 과정 지원자의 학점인정은 학생의 인턴십 최종보고서와 실습기관의 평가서,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의 평가의견을 종합 평가하여 인정한다.

④소속학과(부)장은 인턴십 과정 기간이 종료된 학생에 대하여 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수인정 여부 등을 평가한 인턴십 과정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교과명칭 및 성적의 표기) ①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고 성적을 인정받는 자에 대한 교과명칭 및 성적의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턴십 과정의 교과명칭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 인턴십” 또는 국외 인턴십 과정인 경우에는 이수 국가 명을 포함한 “(국가명)○○○ 인턴십” 등 명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20.10.06.)

2. 이수인정자의 성적은 P(Pass), 불인정자의 성적은 F(Fail)로 평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Grade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2016.02.01.)

②졸업 마지막 학기의 인턴십 과정 평가결과는 소속학과(부)장이 학교에서 정한 졸업사정 전까지 이수인정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지원)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인턴십 과정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여름학기 인턴십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여름학기 인턴십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의 특례) 제12조1항1호의 개정사항은 기 이수한 과정보다 소급하여 적용한다.